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스토리지 신규 구축 사업



2022. 07.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목 차 ▶

I. 사업 개요	3
1. 사업 명	3
2. 사업 목적	3
3. 사업 기간	3
4. 납품 및 설치장소	3
II. 도입장비 규격	4
1. 스토리지	4
III. 과업지시 내용	5
1. 계약 요구사항	5
2. 보안사항	7
IV. 특수조건	7
1. 적용범위	7
2. 구입조건	7
3. 제품포장 및 운반	8
4. 납품 및 설치	8
5. 물품 검수	10
6. 교육 및 운영지원	10
7.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11
8. 하자보수지원	12
9. 제출서류	13
10. 기타사항	14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스토리지 신규 구축 사업 과업지시서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하 “병원” 이라 한다.)과 계약업체(이하 “업체” 라 한다.)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스토리지 신규 구축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 사업개요

1. 사업 명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스토리지 신규 구축 사업

2. 사업 목적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스토리지 신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병원”이 “업체”와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장비의 가용성, 확장성, 안정성 및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4. 납품 및 설치 장소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5층 정보전산팀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부산대학교치과병원

II 도입장비 규격

1. 스토리지

구 분		세 부 규 격
H/W	Controll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ve-Active 컨트롤러 이중화 제공 - All Flash Array 스토리지 제공
	Cach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 384GB 이상 제공 (SSD 방식 제외, 최대 768GB 이상 확장가능) - 전원 장애 시 캐시데이터 보호를 위한 별도 SSD 제공 (SSD 타입)
	Interf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스트 인터페이스 : 16/32Gbps FC 8포트 이상 제공(16Gb SFP+포함), 24포트 이상 확장지원
	Disk type 및 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TB NVMe SSD 10개 이상 제공(Raid5 Usable 27TB이상) - Global Spare Disk 지원 (3.8TB NVMe SSD 1개 이상 제공) - 디스크 확장성 : 최대 504개 디스크 장착 지원 - 하드웨어기반 RAID 1+0, 5, 6 지원 및 혼용 구성 가능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UI 기반의 스토리지 관리 SW 제공 - 성능 모니터링 등 스토리지 전용 관리 서버 제공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지 컨트롤러 기반의 압축 및 중복제거 기능 제공 - 컨트롤러기반의 암호화 기능 지원 - 데이터 손실 없는 실시간 비동기 방식의 원격복제 지원 - 최대 65노드이상 Scale-Out 확장 지원 - 내부복제(Snapshot, Clone) 솔루션 제공 - 온라인 중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능 제공 - 컨트롤러 교체 시 Data-In-Place(DIP) 무중단 온라인 교체 지원 - Power, Fan 등 스토리지 주요 구성요소의 Hot Swap 및 이중화 제공 - 이기종 스토리지 가상화 솔루션 제공 - Symmetric Active-Active 구조로 단일 LUN에 대한 이중 컨트롤러 동시 데이터 서비스 기능 제공 - 장애 시 SMS 기능 제공 (CD-Key, Dial, TCP, Http, Modem 방식 등) - 업무 특성에 따라서 효율적인 캐시 운영을 위한 캐쉬 파티셔닝 기능 제공 - 컨트롤러 기반의 Active-Active 스토리지 클러스터 구성 지원 - 추가 스토리지 구성 시 2대 이상 구성하여 데이터센터 간 Active-Active 구성 가능 할 것(별도 Appliance방식 제외) - 채널 장애 시 채널 Fail Over 및 자동 부하분산 기능 지원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제출 - 제품 설치 후 3년간 무상 유지보수 지원 - 기존 장비의 데이터 이관 작업 지원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OEM, ODM 제품 제외 	

III

과업지시 내용

1. 계약 요구사항

- 가. “업체”는 계약 전에 본 과업지시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 및 사후처리를 위해 해당 물품 제조사와 계약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병원”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기존 전산장비와의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어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원(原)제조사가 단종하거나 단종예정인 기종이어서는 안 된다.
- 다.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병원”이 규정한 사양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 후라도 기준 미달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업체”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라. “업체”는 납품과 설치 중 장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병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방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마.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업체”가 책임을 지고, “병원”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장비 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바. 필요시 “업체”는 검수 이전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감시 및 튜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 검수 완료 후에라도 신규 시스템의 구매·설치·운영에 있어서 “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병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업체”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 자. 납품·설치 결과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병원”은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차. 최상의 시스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 도입된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체”는 변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병원”과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카. “업체”는 원활한 기술이전 및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연계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 시 현 유지관리 업체의 기술지원 협약을 통하여 적극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타. “업체”는 납품·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파. 사업 수행 중 “업체”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병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능력 보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하. “병원”은 “업체”의 사업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거.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병원”의 해석에 따르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지침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습에 의한다.
- 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업체”는 “병원”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2. 보안사항

- 가. “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상주인력에 대한 정보유출 책임도 업체가 져야 한다.
- 나. “업체”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업체”는 계약 체결 후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병원”은 “업체”의 보안대책이 상기 지침과 상이할 경우 “업체”의 보안대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라. “업체”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IV

특수조건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스토리지 신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매·설치하는데 있어서 “병원”과 “업체”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물품의 설치·납품조건, 방법 및 시험운영, 교육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2. 구입조건

- 가.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하는 정품, 완제품,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병원”이 요구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사양을 위배하여 납품했을 경우 그 책임은 “업체”에게 있으며 “병원”은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나.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하여 “병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시스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별로 원저작권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품포장 및 운반

“업체” 는 납품되는 각각의 모든 물품을 원제작자의 표준 포장규격에 맞도록 포장·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병원” 의 입회하에서 포장을 해체하고, 디지털이미지로 저장하여 납품사진첩에 포함하여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

가. “업체” 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병원” 의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업체” 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전담 PM(책임자)을 선임하여, “병원” 의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업체” 의 전담 PM은 선임 시부터 검수완료 시까지 본 과업지시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작업과정에 참가하여 작업내용,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병원” 의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스템 설치 전후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중 “병원”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추가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마. “업체” 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병원” 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장비 및 비용은 “업체” 가 부담한다.

바.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병원” 의 감독관이 승인한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병원” 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일과시간 중에 시

스텝 설치할 하는 경우 기존 시스템의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사. 납품·설치하는 H/W 및 관련 S/W 구성, 정보통신망의 연결 등이 “병원”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호환성 등이 “병원”의 시스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아. “업체”는 장비설치에서 “병원”의 정보전산팀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전원설비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모든 필요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업체”의 부담 및 책임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자.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장비와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병원”의 승인을 득한 후 “업체”의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차. “업체”는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 중 장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병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방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업체”가 책임을 지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카. 본 시스템 납품·설치 결과가 “병원”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타.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의 구매·설치·운영에 있어서 “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병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업체”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파. “업체”는 납품되는 H/W와 S/W의 한글로 작성된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한 운영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물품 검수

-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하여 “병원”의 감독관이 제시하는 모든 검수 항목을 충족하였을 경우 완료한다.
- 나. “업체”는 검수 요청 전 “병원”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시행하여 “병원”이 요구한 규격의 만족여부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운영 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다. “업체”는 현장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병원”이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라. “업체”는 검수 전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병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운영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S/W 포함)은 검수 기간 동안 “병원”에게 설치·제공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마. “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일체의 물품을 설치하지 못하거나 정상 동작하지 못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 바. 최종 검수결과 규격의 누락 또는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병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원”의 요구 시 “업체”는 시공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 본 계약의 납품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6. 교육 및 운영지원

- 가. “업체”는 시스템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병원”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병원”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H/W 및 S/W에 대한 운영 교육을 하여야 한다.

- 나. “업체”는 시스템 및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교육을 “병원”의 요청에 따라 교육대상과 시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된 것으로 한다.
- 다. “업체”는 시스템 검수 후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1) 납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 2) 시스템 안정화 작업
 - 3)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 4) “병원”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무 교육 지원
- 라. “업체”는 “병원”의 신규 시스템 구축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가. “업체”는 유지관리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월 1회 이상 “병원”에 방문하여 정기 예방점검 및 최신 버전으로 패치 적용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의 모든 활동 세부내역은 “병원”의 유지관리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병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유지관리 직원은 원활한 시스템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병원”이 인정하는 물품 제조사의 해당 기술자격과 경력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 다. “업체”는 구축 또는 유지관리 기간 중에 본 시스템의 구성요소의 최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라. 유지관리 기간 중 “병원”의 사정으로 시스템 확장 및 장비의 관내 이전설치, 추가 시스템의 구성 등을 하면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마. 시스템 검수 후 비정상적인 서비스가 발생 되면 “병원”의 요구에 따라 “업체”는 기술자 1명 이상을 “병원”이 정하는 장소에 상주시키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 상주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유지관리 대가는 납품단가에 포함하며, 최초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기간은 하자보수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8. 하자보수지원

가. “업체”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인원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병원”이 필요한 장애복구 시 즉시 응해야 한다.

나. 장애 발생 시 수리정비는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도착, 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및 장애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1) “업체”는 장애신고 접수 후 위의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2) “업체”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3) 하자보수(무상)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는 “병원”에게 3일 이내에 그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 규명에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위 기간 내에 우선 제출한 후 최종 원인 규명에 관한 내용을 차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무상) 기간에 납품 시스템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병원”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신규 시스템(또는 장비)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24시간 이상) “병원”의 시스템 가동 운영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업체”는 해당 시스템(또는 장비)을 동급 이상의 시스템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병원”의 운영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무상) 기간 중 장소 변경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 “업체”는 이설 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9. 제출서류

“업체”는 물품 납품 시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다.

가.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1)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원본 1부.

나.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서류

- 1) 설치인력의 명단,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 설치인력) 등
- 2) 사업수행계획서
 -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 설치계획서, 보안대책 등 포함
- 3) 제조사의 납품물품 상세명세서(Information List) 및 산출명세서(계약금액 기준 물품구성품별 단가명세)
- 4) 해당 물품 제조사가 발급하는 물품공급증명서 또는 물품공급확인서 원본

라. 검수 시 제출서류

- 1) 사업완료보고서 1부
 - 설치 전후 시스템 관련 구성 자료
 - 기술지원 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관리 체계도 등
 - 납품제품 및 작업 모습의 사진첩(전체, 주요 부분별 확인)
- 2) 검수 체크 리스트 1부
- 3) 시스템 운영관련 관리자 설명서(한글) 1부
- 4) 납품 물품 및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증서 1부
- 5) 대표자 보안협약서 1부

10. 기타사항

-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납품·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빠진 사항에 대하여 “업체”는 시스템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과 협의로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나. 모든 장애 발생 시 “업체”는 우선적인 대처 의무와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이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업체”가 책임진다.
-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병원”과 “업체”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병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라. “업체”가 물품납품 및 설치, 시험테스트, 검수 후 해당서비스 등에서 비롯되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병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업체”가 진다.